

박사학위과정 운영 세칙

제정일 : 2008. 5. 29
제1차 개정일 : 2009. 7. 22
제2차 개정일 : 2011. 10. 19
제3차 개정일 : 2013. 2. 1
제4차 개정일 : 2014. 2. 1
제5차 개정일 : 2015. 2. 1
제6차 개정일 : 2016. 2. 1
제7차 개정일 : 2017. 2. 1
제8차 개정일 : 2019. 2. 1
제9차 개정일 : 2021. 8.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박사학위과정의 제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 전형

제2조(지원자격) 철학박사(Ph.D.) 및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1.)

- ① M.Div.(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와 Th.M 학위 소자(예정)자
- ② 성서신학전공 시 고급히브리어 또는 고급그리스어 수준구비
- ③ 영어 및 제2외국어 필기/구두시험 합격자(개정 2015.2.1.)
- ④ 석사학위논문 또는 15-20 페이지 논문제출(개정 2011.10.19.)

제3조(전형방법 및 배점)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통사항
 1. 서류전형(200점)
 2. 필기시험(300점) : 영어(100점), 전공논술(200점)
 3. 면접(200점)
 4. 서류 및 면접에 대한 세부 배점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철학박사(Ph.D.)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제2외국어 시험을 시행한다.
 1. 성서신학(100점) : 구약학(히브리어), 신약학(헬라어)

2. 이론신학(100점) : 라틴어, 독일어 택 1
3. 실천신학(100점) :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택 1

제4조(편입학) 편입학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의 전형방법 및 배점 기준은 서류전형의 배점기준을 제외하고, 신입학의 기준과 동일하다.
- ③ 편입학을 원하는 자의 학기는 최대 3학기, 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 ④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업과 성적

제5조 <삭제> (개정 2013.2.1.)

제4장 개인지도 · 논문 및 학술세미나

제6조 <삭제> (개정 2013.2.1.)

제7조(선수과목)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선수과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 ② M.Div. 혹은 Th.M. 없이 입학한 경우 선수과목 (구약 혹은 신약개론, 조직신학개론, 교회사개론, 기독교교육개론, 실천신학개론)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성서학 지원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각 3학점 이상 이수토록 한다.

제8조 <삭제> (개정 2013.2.1.)

제9조 <삭제> (개정 2013.2.1.)

제5장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제10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어시험 : 2학기(6학점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
- ② 종합시험 : 4학기(15학점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

제11조(시험과목) 철학박사(Ph.D.) 및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시험 (Comprehensive Exams) : 3개의 전공(Major)과목, 1개의 인접전공(Minors)과목 시험을 본다.(개정 2013.2.1.)

1.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7.1.10)

전공	전공(1)	전공(2)	전공3(택1)	인접(택1)
구약학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신학 역사서 시가서	신약학 조직신학
신약학	복음서	서신서	요한문헌 신약신학	조직신학 구약학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기독교윤리 종말론 교회론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교회사	초대교회사	근현대교회사	종교개혁사 중세교회사 한국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예배학	목회학	교회성장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상담연구방법론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심리	기독교교육사	교육연구방법론	기독교상담학 교회사
선교학	현대선교학	선교전략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교회사 조직신학

② 외국어시험 (Language Requirements) : 전공과목의 영어(English)문헌 해독 정도로 한다. 단, 구약학(히브리어), 신약학(그리스어), 교회사(라틴어)는 추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2.1.)

③ 구두시험 : 종합시험의 마지막 단계로 구술시험을 가진다.(신설 2014.2.1.)

제12조(출제범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시험 : 전공분야 영어문헌의 해독 정도로 한다. 단, 성서학 전공의 경우에는 성서원문의 해독 정도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③ 구두시험 : 전공에 관한 폭넓은 지식, 학위 논문 주제 관련 지식에 대한 구두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신설 2014.2.1.)

제13조(배점 및 합격기준) 배점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 ② 종합시험 : 전공과목 별 필기시험은 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신설 2014.2.1.)
- ③ 구두시험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심사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합격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합격 처리한다. 단, 합격 가부의 결과가 50%인 경우 지도 교수의 의견에 따른다.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한다.(신설 2014.2.1.)

제14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채점위원은 그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과목별 출제 및 채점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구두시험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모두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교내 심사위원만으로 또는 3인 이상 심사위원만으로도 시험이 유효하다.(신설 2014.2.1.)

제15조(재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구두시험은 각 시험 당 2회까지 재시험이 가능하다. 3회 이상 과락시 학위과정이 취소된다. 이 조항은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된다.(신설 2011.10.19. / 개정 2016.2.1./ 2019.2.1.)

제6장 학위논문 · 학위수여

제16조(계획서 제출) 계획서 제출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서 제출은 교과과정,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구두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통한 후 6개월 내에 연구 조사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1.10.19.)
- ② 제출된 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 포함한 박사과정 교수 위원회의 일정에 의하여 논문계획서제출과 논문개요발표회를 실시한다.(개정 2013.2.1.)
- ③ <삭제> (개정 2013.2.1.)
- ④ <삭제> (개정 2013.2.1.)
- ⑤ <삭제> (개정 2013.2.1.)

제17조(논문지도기간) 논문지도교수로부터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논문심사위원)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박사학위소지자를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타 전공 1명, 타 대학 1명(타 대학은 전공계열이 같은 경우)으로 외부위원(External Examiner)을 위촉한다.(개정 2011.10.19. / 2014.2.1.)

제19조(논문심사)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 ①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찬성으로 통과한다.(개정 2013.2.1.)
- ② 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4인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③ 학위논문 제출시 ‘연구윤리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신설 2011.10.19.)

제20조(학위논문언어) Ph.D. 학위논문은 국문, 영문 또는 제 3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1.8.17.)

제21조(학적유지)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유지케 한다.

제22조(논문제출요건) 학위논문은 전국규모 학회지 게재 또는 학술회의 발표를 권장하며, 기고한 논문 또는 논문기고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0.19.)

제23조(논문지도지침) 지도교수와 지도 받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국·내외적으로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교회 및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4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을 평가하여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즉 표절 또는 대필로 받은 경우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전에 표절, 대필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신설 2011.10.19.)

② 추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취소되며, 지도교수 및 그 학위와 관련된 교수는 징계근거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2011.10.19.)

부 칙

1. 본 세칙은 2008년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2009년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11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2013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세칙은 2014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세칙은 2015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세칙은 2016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세칙은 2017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세칙은 2019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세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